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3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강선영 · 김재섭
김기현 · 주호영 · 김도읍
구자근 · 박덕흠 · 백종현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1항 단서 중 “제37조”를 “제3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결격사유)”를 “(결격사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제1항제4호 중 “제37조”를 “제3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의2(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<u>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</u>	제36조의2(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제37조</u>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7조(<u>결격사유</u>) (생략)	제37조(<u>결격사유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<신설>	③ <u>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</u>

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자격 정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1. ~ 3의2. (생략) 4. <u>제37조</u>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. ~ 7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<u>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자격 정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37조제1항</u>----- 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